

창원지방법원 2016. 6. 9 선고 2016가단505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6. 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창원시 의창구 D 대지 331㎡ 지상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(가)부분 19.83㎡, 같은 목록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3.22㎡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C은 별지 목록 건물에서 퇴거하라.

2. 피고 B는 원고에게 2009. 4. 27.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7,447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유환우

별지